

한국의 여성 결혼이주자정책 : 상호문화주의적 조망과 함의

김경숙
공주대학교

The Migrant Women Policy in Korea : Prospect and Implication in the point of Interculturalism

Kyung Sook Kim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이 글에서는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한국에서 압축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인종사회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개괄하고,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 지향적이고 젠더 편향적인 이슈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초국적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에서의 독특한 정체성 재형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이 지향할 수 있는 현실적 지향점으로서의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징, 유럽의 정책 및 사업 사례를 예시하고, ‘상호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 ‘선택적 동화’를 통한 ‘다원적 통합’ 지향, 여성 결혼이주자의 상호문화적응프로그램 강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문화성 측정 지표 개발과 평가 결과의 이주자정책에의 피드백 등 상호문화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주제어 : 여성 결혼이주자정책, 상호문화주의, 인종, 젠더, 사회통합

Abstract This is a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 and its limit of Korean migrant women policy to prospect and suggest in the point of interculturalism. The focus of this paper is in summing-up to current situation of multiethnic society which rapidly progressing in Korea and in reviewing the race-oriented, gender-biased issue in the migrant women policy in Korea. However, the migrant women go through by the unique rebuilt progress in the transnational social field which can be continue for several or for decades between delivery country and inflow country but the one-sided, certain movement to a new country. In the above mentioned standpoint, this paper can suggest the implication for the concept and its character of interculturalism, the policy and undertaking case in Europe as a realistic directing point on which the migrant women policy in Korea. The educational program consolidation of intercultural citizenship, the orientation of pluralistic integration through selective assimilation, the consolidation of intercultural adaptation program, the intercultural measurement metrics development and feedback which considered of Korean characteristics are proposed in this paper.

Key Words : migrant women policy, interculturalism, ethnicity, gender, social integration

Received 1 July 2014, Revised 20 August 2014
Accepted 20 Sept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Kyung Sook Kim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kskim114@kongj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여성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증가로 다문화주의 담론이 활발해지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들의 사회통합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주민정책에서 지칭되는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개념은 “이주민의 경제적 편입과 정치적 참여, 사회문화적 적응을 통해 내국인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자, 전체 사회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¹⁾[1]. 카르허(Albert Karcher)는 사회통합을 “이주민이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²⁾[2], 크트텐(Hermann Kurthen)과 하이슬러(Barbara S. Heisler)는 “통계지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이주민과 내국인 사이의 사회경제적 차이의 수렴”으로 정의하였다³⁾[3]. 이주자가 이주국에 사회적으로 통합된다는 의미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주민 정책에 있어서의 사회통합 개념은 이주자가 이주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제도와 관계 속에 포함되는 과정이지만 이주자가 반드시 이주국의 문화적 행동양식이나 가치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⁴⁾[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의 개념은 그 국가가 지향하는 다문화정책의 기조에 따라 흡수(absorb), 적응(adaption), 포섭(inclusion)의 개념과 혼용되거나 동화(assimilation)의 개념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⁵⁾[5].

한국은 세계에서 민족 단일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간주되어 온 나라이다.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인으로서의 혈통과 언어 및 한국적인 사회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특징은 여성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으로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특정집단을 주변화하거나 종속시키는 경향을 지닌 불가소성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로는 인권 침해와 이주민 유입국 국민의 “원하지 않는 시민들”에 대한 차별화를 정당화, 제도화하기도 한다⁶⁾[6]. 한 국가의 이주민정책에서 사회통합을 추진하면서도 그 지향점이 ‘흡수’나 ‘동화’의 개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커진다.

한국에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방식은 독특하다. 그리고 때로는 다문화주의가 통상 추구하는 가치들과 모순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자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 경우에는 결혼이주자정책이 재생산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조망되므로 이슈의 범위도 가족으로 제한된다.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가부장주의에 기초한 젠더적 편견을 지닌 내용으로 이행되어 온 이면에는 이러한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⁷⁾[7].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한국에서 압축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인종사회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개괄하고,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 지향적이고 젠더 편향적인 이슈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새로운 나라로의 일방적이고 확실한 이동이 아니라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에서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일련의 ‘초국적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에서의 독특한 정체성 재형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현실적 지향점으로서의 상호문화

- 1) 김태원, 다문화 현상에 대한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민족문화논총, Vol. 44, p. 398, 2010.
- 2) Albert Karcher, Integration Turks in Germany : The Separation of Turks from German Society, Discrimination against Turks in the German Labor Market and Policy Recommendation to Integrate Turks into German Society, Public Policy Studies, p. 3, April, 2010.
- 3) Hermann Kurthen & Barbara S. Heisler, Immigrant Integration : Comparative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Ethnic and Racial Studies, 32-1, p. 141, 2009.
- 4) 조용만, 박성범, 국제결혼이민자의 초기 사회통합증진 방안 연구,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pp. 469-470, 2013.
- 5) Friedrich Heckmann, et al., Quantitative Integration Research in Europe - Data Needs and Data Availability, PROMINSTAT Working Paper 3, p. 7, 2010.
- 6) Geun Koh, Multiculturalism in Korea? : Gendered Multiculturalism and Marriage Migrant Women,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onference, pp. 1-2, 2010.
- 7) 김현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 가부장제와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 다문화정책 현황과 입법 방향 -, 국회입법조사처, p. 2, 2009.

주의의 개념과 특징, 유럽의 정책 및 사업 사례를 제시하고, 상호문화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2. 압축적 다인종사회화와 정책 대응

최근 한국은 인종단일주의의 신화가 도전받을 정도로 결혼이주자들이 급증해 왔다. 2013년 2월 현재 한국의 총 인구 중 외국인 거주자는 3.08%(1,576,034명)이다. 이는 10년 전의 718,000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중국인이 49.3%(778,000명)이고, 미국인 8.5%(134,000명), 베트남인 7.6%(120,000명), 일본인 3.6%(56,000명) 순이다. 외국인근로자는 549,000명이고, 결혼이주자는 150,865명, 해외동포는 235,000명이다. 결혼이주자 수는 2009년 125,087명에서 2010년 141,654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분포는 중국인이 41.4%(62,400명), 베트남인 26.4%(39,854명), 일본인 8.1%(12,220명), 필리핀인 6.9%(10,383명)이다⁸⁾[8].

결혼이주자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가족과 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한국정부는 1997년에 ‘국적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2006년 4월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의 목표는 “여성 결혼이주자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 실현”이었다. 주요 정책들은 (1) 국제결혼중개업체 규제 및 한국 입국 이전에 결혼이주자 보호 (2) 국내에서의 폭력 희생자 지원 (3) 신착 여성 결혼이주자 지원 (4) 국제결혼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 (5) 여성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 (6) 다문화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7) 광범위한 장기 계획수립이었다⁹⁾[9].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결혼 및 정착과정의 다양한 난관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 대책은 여성 결혼이주자정책 수립의 지침이 되었다.

그리고 국제결혼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허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여성 결혼이주자의 불안정한 거주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보증을 취소했을 때는 NGO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적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고용지원프로그램도 강화되었다. 또 문

화적 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이벤트 및 장려정책과 더불어 정책수립자와 서비스 담당 인사들을 위한 다문화교육도 시행되었다. 여성 결혼이주자들의 빠른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한국어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도입되었다¹⁰⁾[6].

이후 한국정부는 2008년 12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5년 단위 국가계획(2008년~2012년)인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외국인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4대 목표와 13대 중점과제를 발표하였으며, 2012년 12월에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이 정책 계획에 따라 한국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2008년에 입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제도, 여건 조성, 필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1)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이해증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생활정보 제공 (3)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하여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가정폭력 방지 노력 수행 (4) 아동의 보육 및 교육 (5) 결혼과 자녀 양육, 직장생활에 대한 생활 및 법률 상담 제공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으로 지원 및 서비스 전달조직 운영 등으로 이루어졌다¹¹⁾[10].

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12.

9) 이혜경, 한국에서의 국제결혼과 국가 :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Citizenship Studies* 12(1), pp. 107-123, 2008.

10) Geun Koh, op. cit, pp. 6-8.

11) 권용호, 지성우, 강현철,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정 관련 법에 대한 입법 평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p. 16, 2009.

그리고 2008년에 ‘제1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이 수립되어 5년간 집행되었으며¹²⁾, 2013년부터 ‘제2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이 집행되고 있다. 제2차 계획에서는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6) 정책추진체계 정비를 중심으로 한 86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¹³⁾[11].

또한 한국정부는 2008년 사회통합 강화를 목표로 한국어필기시험을 부활하고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실시를 위한 법무부 훈령을 제정하였다.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는 이민자 및 국민 등 신청자에게 언어능력과 다문화사회 이해 정도 등 기본소양에 관한 사전평가를 거친 후 1~4단계에 각각 100시간씩 교육하는 언어과정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과정(2010년 개정 시행에서는 한국사회 이해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2014년 2월에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이민비자(F-6)를 받으려면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초급·1급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고시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신부가 비자를 받으려면 소평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800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 TOPIK 초급 1급을 받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세종학당에서 초급 1급 30~60주(120~150시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한국에 1년 이상 거주경력이 있거나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거나 부부 사이에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한국어 능력요건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¹⁴⁾[12].

3.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인종 지향성과 젠더 편향성

한국의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은 인종 지향성과 젠더 편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한국은 인종단일주의의 강한 신화 때문에 결혼이주가 젠더와 민족 간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다¹⁵⁾[7].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

가 드문 인종적으로 단일한 민족국가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민족성을 규정할 때 인종을 기반으로 정의하는 것과 단일혈통의 관념을 강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¹⁶⁾[13][14].

이러한 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정 및 법의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첫째, 현 단계에서의 법 제정의 목적과 지향이 동화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07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 법의 제안 이유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현 단계에서는 이 법의 당면 목적이 다른 문화의 인정과 공존을 지향하는 다문화주의보다는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의 한국사회 주류로의 흡수, 통합에 강조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을 지원 대상 범위가 매우 협소한 ‘국민’ 또는 ‘예비국민’으로 설정하였다¹⁷⁾[15]. 이 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다¹⁸⁾[10].

셋째, 그 동안 한국이 집행해 온 혈연적 요소에 기초한

- 12) 제1차 계획에서는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2) 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3)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 역량 강화, (4) 다문화가족 자녀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를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 13)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제1, 2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 14) 법무부,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15) Geun Koh, op. cit, p. 3.
- 16) Walker Connor, *Ethnonationalism*,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Ki-Wook Shin, *Ethnic Nationalism in Korea*,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 17) 이용승,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주체와 제도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한국민족연구원, Vol. 44, pp. 128-129, 2010.
- 18) 권영호, 지성우, 강현철, *ibid*, p. 7.

이주자들의 차별적 수용정책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결혼이주자정책은 한국에서의 영구거주와 가족형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자정책은 외국인근로자정책과 정책기조가 상이하다. 한국에서는 시민권 측면에서의 차별은 줄어들어 왔지만, 인종적 측면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한국 이주정책에서 선호하는 인종에 대한 지향성이 뚜렷해 이주자들의 ‘시민적 지위의 계층화’라는 독특한 특징도 나타난다¹⁹⁾[16].

한국 이주자들의 시민적 지위에서 보면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선진국 재외동포와 함께 이주자 계층화에서 최상위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²⁰⁾[16]. 그 이유는 여성 결혼이주자들이 가장 인종친화적인 이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자들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인과의 원초적인 혈연관계가 형성되는 한국 가족의 일원이다. 여성 결혼이주자는 한국인 2세를 낳고 양육한다는 점에서 ‘우리’로 동질화되면서 큰 거부감 없이 수용된다. 그리고 ‘한국인과의 혈연적 연계에 기초한 이주자들의 차별적 수용’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모리스 리디아(Lydia Morris)가 ‘시민적 계층화’(civic stratification)라는 개념을 통해 국가적 폐쇄 또는 탈국가적 확대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간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권리의 차별화된 체계이자 부분적 멤버십(partial membership)으로서의 시민권의 사례를 설명한 것과 연계해 볼 수 있는 특징이다²¹⁾[17].

넷째,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의 목적 역시 서구국가들의 경우와 다르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는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에서도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는 결혼이주자의 한국사회 부적응이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제도인 반면, 서구국가들의 경우는 이민자들의 사회부적응 문제 보다는 시민권 확대와 다문화주의 확산에 따른 국가 정체성과 다원화된 사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제도이다.

한국의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 있어 나타나는 두 번째 주요 특징은 젠더 편향성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확인된다.

첫째,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주자는 다른 외국인근로자들에 비해 한국 시민권을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주자들의 신분은 개인적인 권리

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 남편과 가족과의 관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 있어서도 인종적 요인이 시민적 요인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된다. 이는 현재의 한국 다문화주의가 가부장주의에 기초한 젠더 편견이 내재된 개념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여성 결혼이주자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와 상황을 존중하고 보호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가족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된다는 점에서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독립된 주체이기보다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에 한정된 객체로 여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²²⁾[9].

둘째,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 경우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재생산 노동력이라는 면에서 기대를 받으면서 그들을 위한 입법과 정책 또한 노동력 유지라는 이슈에서 조망되는 것이다²³⁾[7].

셋째,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성 결혼이주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1) 입국 및 가족 구성 (2) 임신 및 출산 (3) 자녀양육 (4) 노동시장 진입의 4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즉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단선적인 정착과정을 거치는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됨으로써 이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과정과 패턴들이 간과되는 것이다²⁴⁾[6].

넷째, 여성 결혼이주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 이들의 노동권은 후순위로 설정된다. 김현미(2008)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 결혼이주자들의 60%가 보수를 받는 노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의 93%가 노동시장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에 노동할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다섯째, 여성 결혼이주자들을 잠재적인 정치적 행위자로 인식되는 정도가 미약하다²⁵⁾[18]. 이 역시 이들이 아

19) 조화성, 한국 이민정책의 탈민족화와 재민족화, 민족연구, Vol. 40, p. 56, 2009.

20) 한국 이주자들은 공식적 시민권의 지위 및 권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등 선진국 재외동포와 여성 결혼이주자, 중국 및 구소련 재외동포,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순위로 계층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화성, *ibid.*, p. 56, 2009.

21) Lydia Morris, Managing Contradiction: Civic Stratification and Migrants' Righ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7, No. 1, p. 79, 2003.

22) 이해경, *op. cit.*, p. 120.

23) 김현미, *op. cit.*, p. 2, 2009.

24) Geun Koh, *op. cit.*, p. 8.

내 또는 어머니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할 때 법적 신분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가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섯째,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이주여성의 피해나 결혼 파탄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 보다 한국남성의 소비자 권리가 더 강조된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일곱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이주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주여성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경제적 주류화모델 보다 복지모델에 근거한 정책적 기초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²⁶⁾[7].

집단 간에는 능력, 문화, 가치 및 행태 스타일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에서 출생한 한국인들과 결혼이주자들 사이뿐 아니라 결혼이주자들 간의 차이도 존중되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여성 결혼이주자가 한국에서 출생한 한국인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과 결혼이주자 뿐 아니라 결혼이주자들 간에도 이들의 모국이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들의 개인적인 욕구와 이익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사적영역도 존중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²⁷⁾[6].

4.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지향과 상호문화주의

최근 한국사회는 압축적 경제성장에 이어 다출신국 다인종사회화도 압축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이민자 수용 측면에서는 ‘구분배제’ 모형을, 결혼이주자 대상 사회통합정책 측면에서는 동화모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²⁸⁾[19]. 이주노동자 집단은 교체순환원칙과 자국의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통합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배제 모형이며, 결혼이주자의 경우는 주류사회가 이주자 유입에 따른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동화모형으로 판단되는 것이다²⁹⁾[20].

그러나 이주자의 현실과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간에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이

주와 결혼이라는 이중의 문화적 충격을 동시에 겪는다. 그러므로 이들이 한국으로의 이주를 통해 어떠한 ‘초국적 사회적 장’을 경험하면서 정체성의 변화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규명하고 이러한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새로운 나라로의 일방적, 확실한 이동이 아니라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의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지속되는 일련의 이동을 거치면서, 양국 모두에 대한 강한 연결과 다층적 배태성의 특징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들은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에 걸치고 살아가면서 두 사회를 상호 연결하는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간다. 여성 결혼이주자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과정을 백-게른세임(Beck-Gernsheim)은 ‘초국적 사회적 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⁰⁾[21]. 즉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유입국의 이주자수용정책이 차별배제모형, 동화주의모형, 다문화주의모형 중에 어떠한 것을 지향하든지간에 이주 초기단계에는 출신국과 유입국을 연결하는 다층적인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고 지속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레빗과 야보르스키(P. Levitt & N. Jaworsky)가 ‘초국적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듯이,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양국에 걸친 유동적 공간에서 하나 이상의 사회에 대한 동시적 배태성으로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초국적 이주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³¹⁾[22].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여성 결혼이주자들의 초국적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게 된다. 첫째,

- 25) LeeAn Jiyoung, Resistance to ‘integration’ by Marriage Migrants, Asian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s, 2008.
- 26) 김현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 가부장제와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한국이민학회 정기학술대회,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 pp. 34-34, 2008.
- 27) Geun Koh, op. cit, pp. 14-16.
- 28) 설동훈, 한국 사회 다문화 담론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제7차 인권교육포럼 개최 : 다문화 인권정책의 현안과 과제, p. 36, 2009.
- 29) 조화성, 한국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모델의 검토, 민족연구, 한국민족연구원, Vol. 44, p. 7, 2010.
- 30) Elizabeth Beck-Gernsheim, Family Life Today : New Migrants Choose Partners from Their Country of Family Origins, Gender and Society 7, 2, pp. 11-32, 2008.
- 31) P. Levitt & N. Jaworsky, Transnational Migration Studies : Past Developments and Future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 pp.129-156, 2007.

이주와 더불어 친정가족과의 관계가 절연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 너머로 확장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만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겪는 초국적 장의 경험을 통해 배우자도 상호적응과정을 거치게 된다. 둘째, 여성 결혼이주자들의 적응과정과 초국적 장의 경험은 삶의 주요 주기별 계기를 거치면서 정체성을 서서히 변화시켜 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이주와 함께 시작되는 출신국으로부터의 탈영토화, 이주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진행되는 재영토화, 친정 방문과정의 모국 재발견과 권한부여(empowerment)로 이중의 정체성 또는 초국적 정체성 형성단계를 거치게 된다. 셋째, 초국적 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국경에 대한 인식이 점차 퇴색되어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여성 결혼이주자들의 초국적 정체성의 특징은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 있어서 한국 문화와 가족에 대한 일방적 적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이들 및 가족의 초국적 장의 경험과 초국적 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³²⁾[23].

이주자의 '통합'이 '동화'와 구별되는 점은 그 사회로의 일방적인 적용과 순응의 차원을 넘어 이주국이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수용하는가하는 정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주자들이 단일 문화사회로 어떻게 녹아 들어갔는지의 여부보다는 이주자와 원주민간의 일치성(congruence)과 단절성(disconnection)의 관계가 중요하다³³⁾[7]. 이러한 점에서 1997년 '국적법' 개정과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이후 집행되어 온 한국의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 대해서는 그 지향점이 통합을 표방한 동화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볼 때 한국의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이 표방하는 정책적 지향점으로서 다문화주의가 가장 적실성을 지니는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상호문화주의의 측면에서 한국의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상호문화주의란 다양한 민족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다른 민족의 고유문화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개방적 자세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논리이다. 상호문화주의의 개념은 1960년대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 퀘벡 주를 분리해 독립시키려는 분리주의자들(separatists)의 운동이 활발해지자, 캐나다의 분

열을 반대하는 프랑스계 민족주의자들(nationalists)들이 다민족사회의 통합 원리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2000년대부터 유럽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상호문화주의는 캐나다에서 논의되던 내용과는 달리 다수 주류층의 강자문화와 소수 비주류층의 약자 문화를 구분하는 도식에서 조망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대안 논리로 이념적 기초를 재정립하고 있다³⁴⁾[24].

유럽에서 부각되고 있는 상호문화주의는 이민자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법적 장치를 통해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화적 개방을 창의적, 혁신적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자산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공존을 위한 교육·문화 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다문화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상호문화주의는 주류민족과 소수민족이 구분되는 상황을 방관하는 다문화주의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즉 상호문화주의는 민족문화간의 상하관계를 부정하며,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상호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초점을 두고, 모자이크 상태의 정적인 문화공존을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면, 문화상호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며, 지역사회에서 문화 간 상호작용이 없는 단순한 공존상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³⁵⁾[24].

상호문화주의란 차이(다문화주의)나 공통점(초문화주의)의 뿐 아니라 경계와 접촉의 서로 겹치는 부분, 상호의존, 침투에 초점을 맞추는 지향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다른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를 강조하며, 개개인이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가족과 출신배경에 의존도는 낮추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고유한 행위나 분야, 체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이 겹치는 국면에서 나타난다. 또한 '인정'(recognition)과 가치의 문화적

32) 심영희, 초국적 장과 초국적 정체성 :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소희 편, 다문화사회,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보고서, pp. 39-40, 2012.

33) 김현미, op. cit, pp. 31-32, 2008.

34) 오정은, 유럽의 상호문화주의정책 연구 :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 다문화와 평화, 6집 1호, pp. 41-42, 2012.

35) ibid, p. 43.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에 놓인 상태 또는 성질'로서 문화적 측면과 사회적 배분, 경제적 이해관계의 구조적 측면 사이에 놓여 있는 것과 관련된다. 상호문화주의에서의 '간(間)문화성'의 핵심적 특징인 '간성(間性)'은 하나의 큰 문화를 가정하는 단일문화에 저항하는 특성을 보이며, 자민족중심주의와도 거리를 둔다. 단일한 통일성(단일문화)과 다양성(다문화)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간성'은 한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3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³⁶⁾[25].

상호문화주의의 지향의 이주자정책을 표방한 사례로는 1924년부터 1945년에 활동했던 미국의 '상호(간)문화교육국'을 들 수 있다. 당시 '상호문화교육국'은 이전에 추진되어 온 미국의 동화 및 용해의 문화변용정책(melting pot policy)을 '샐러드 볼 정책'(salad bowl policy)으로 대체하면서 상호(간)문화주의의 지향을 강조했다. 유럽이 사회도 1970년대 말에 '상호문화 선택'(intercultural option)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³⁷⁾[24][25]. 2004년에는 영국의 싱크탱크기관인 커미디아(Comedia)가 <상호문화도시 : 최고의 다양성 만들기(The Intercultural City: Making the Most of Diversity)> 보고서를 발표하고, 2008년에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상호문화적 대화에 관한 백서(White Paper on Intercultural Dialogue)>를 발간해 유럽에서의 상호문화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2008년을 '유럽 상호문화적 대화의 해'(European Year of Intercultural Dialogue)로 지정함으로써 상호문화의 개념을 확산시켰다³⁸⁾[24]. 또 유럽집행위원회는 2008년에 '상호문화도시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정책결정자들에게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다양성 관리'(managing diversity)라는 핵심용어의 틀에서 이주정책에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원칙도 도입하기 시작했다³⁹⁾[26][27].

이러한 서구국가들에서 상호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이주자정책들은 한국에도 시사되는 바가 크다. 한국은 단일민족주의, 혈연에 기초한 국적 부여, 자유주의적 정향의 미약함, 대규모 해외동포의 존재로 인해 정체성의 근거와 내용에 있어 시민적 요소보다 인종적 요소가 강조되어 작동하며, 민족친화성을 중심으로 한 시민적 계층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라이다⁴⁰⁾[16]. 그리고 다문화정책의 대상(다문화의 주체)이 다양하고 이들이 지

닌 특성의 다양성에 따라 하나의 일관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어렵다. 포괄적 범주로 보면 한국에서의 다문화의 주체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국내의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사회통합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범주가 다문화주의라는 일관된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기보다 상호 모순된 내용을 지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는 '일시적 체류자'라는 시각에서 이주민이라기보다는 노동자로서의 동등한 권리가 논의의 중심이 된다. 중국동포,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결혼이주민은 가족과 젠더라는 측면에서 접근된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에서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논의가 규범적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서로 상반된 내용이 표방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이주민정책은 현 단계에서는 상호문화주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일관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호문화주의는 이주자의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과 참여를 중요시한다. 결혼이주자가 사회로부터 격리, 배제되거나 일방적 시혜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고 사회 적응과 참여를 통해 이주국의 주체적 성원으로로서의 관계와 위상을 인정받는다. 이는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관계망, 경제적 자립, 차별 해소 등의 지표들을 통해 표출된다. 사회적 관계망은 결혼이주자가 자신의 출신국 사람 뿐 아니라 이주국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균형적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 자립과 차별 해소는 결혼이주자가 이주국 사회의 주체로서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도록 해 준다. 경제적 자립은 이를 위한 물질적 토대를 이루며, 차별 해소는 제도 및 인식상의 인정을 받게 한다.

또한 상호문화주의는 국가 수준에서 이주민에게 배타적인 자국 문화와 제도를 바꾸려는 정책을 수반한다. 상호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은 상호문화적 시민 의식

36) 허영식,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접근방안으로서의 간문화주의,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와 인간, 제2권 제2호, pp. 54-57, 2013. 12.
 37) Tekessidis, M. Interkultur, Berlin: Suhrkamp, p. 132, 2010, 허영식·정창화, 간문화성과 한국의 정체성, 원미사, p. 56, 2012.
 38) 오정은, op. cit, pp. 42-43.
 39) Tekessidis, op. cit, p. 132, 허영식·정창화, op. cit, p. 56.
 40) 조화성, op. cit, pp. 49-52, 2009.

제고 및 역량 강화, 내국인과 이주자의 사회 주체간 소통 증진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⁴¹⁾[20].

이상에서 논의한 상호문화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및 지역공동체가 ‘상호문화주의 시민권’(intercultural citizenship)에 대한 인식을 시급하게 정립해야 한다. 국민국가에서는 구성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원칙이 국민이라는 기준이었다. 즉 ‘국민됨’(nationhood)이라는 지위로부터 모든 권리와 정체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국제이주 시대에는 ‘보편적 인간됨’(universal personhood)이 구성원 여부를 가르는 잣대가 되는 탈국민적 멤버십이 작동하고, 이에 따라 시민적 권리와 지위가 인정된다. 국민국가 멤버십에서는 출생이나 국적을 통해 시티즌십이 부여되므로 지위, 권리, 정체성이 하나로 통합 연계되지만, 탈국민적 멤버십에서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구성원으로서의 권리가 부여된다. 또 ‘국민됨’의 자격이 없어도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정치적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권리와 다양한 혜택(benefits)만 받는 것도 가능하다⁴²⁾[26].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은 이러한 시대적 특징의 변화를 반영해 국가 및 지방정부가 이들에 대한 차별 시정조치를 강조하는 정책을 일반적으로 하달하기보다는 이들에게 보편적 인간됨에 기반을 둔 상호문화적 시민권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자아존중감 제고를 견인해 내야 한다. 보편적 인간됨에 기초한 상호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자긍심과 자아존중감은 여성 결혼이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자신감과 삶에 대한 목표의식, 긍정적 사고방식을 배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둘째, 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을 현실에 부합되게 설정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예로 사회통합의 기준을 획일화하지 않고 이주자의 개인별 능력, 성향, 특성 및 한국에서의 정착기간 등을 고려해 아래 <Table 1>에서와 같이 완전동화(assimilation) 수준, 다원적 동화(pluralistic integration) 또는 선택적 동화 수준, 주변화(marginalization) 또는 가장자리 수준, 분리(segmentation) 또는 반발적 정체성 유지 수준으로 구분해 선별적인 사회통합정책을 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선택적 동화수준’의 다원적인 사회통

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⁴³⁾[4]. 한국의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이 다문화가족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 내용은 동화주의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지향을 완전동화에서 ‘선택적 동화’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Table 1> Type of Social Integration¹⁾[4]

		level of pol. participation · cultural adaptation	
		high	low
level of social · economic admission	high	assimilation	pluralistic integration
	low	marginalization	segmentation

셋째,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 상호문화성 제고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다. 모국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주국에 적응해가는 상호문화성 제고 프로그램은 여성 결혼이주자들이 하나의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해 살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또 그 변화에 맞추어 생활하는 과정에 경험하는 심각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

상호문화성 제고 프로그램으로는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이 공동 주관하는 유럽의 도시개발프로그램의 일환인 상호문화도시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들이 실시한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틸부르크(Tilburg)시도 상호문화도시프로그램 시행 이전에는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이민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민자를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로 간주하고 이민자 무료교육, 생계비 지원과 같은 복지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후 상호문화도시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상호문화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 시민과 이민자 사이의 교류 증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틸부르크시에서 운영 중인 ‘세계의 집’은 일종의 마을회관으로 네덜란드 문화 및 언어수업교실, 휴게실, 외국인상담실을 갖추고 이주자들이 상호문화 적응을 하도록

41) 조화성, op. cit, pp. 7-9. 2010.

42) 조화성, 한국 다문화 현상의 특징과 새로운 멤버십 모델, 공주대 학술세미나, p. 2, 2012.

43) 조용만, 박성범, op. cit, pp. 496-497.

지원한다.

그리고 거리를 지나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앉아 대화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사교 의자'를 설치했다. '사교 의자'를 제작하는 과정에는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주민화합이라는 상징성을 최대화했다. 또 '이웃중재 자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이는 외국계 주민과 네덜란드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 이웃 간의 사소한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 프로그램이다. 그 밖에도 시와 다국적기업들의 후원으로 외국인주민단체와 네덜란드인단체가 공동 기획하는 거리축제인 T-퍼레이드, 외국계 주민과의 만남을 위한 세계축제도 개최한 다⁴⁴⁾[27]. 이러한 네덜란드 사례는 여성 결혼이주자들이 가사 및 육아로 활동범위가 가정 주위로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참조할 만한 것들이라고 하겠다.

넷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호문화주의의 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앞에서 예시한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 공동주관의 유럽 상호문화도시프로그램에서는 상호문화도시 지표를 개발해 참여 도시의 상호문화성을 평가하고 있다. 객관적 요소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현지인과 이민자의 교류를 촉진하는 제도나 공공서비스 유무, 해당 도시 구성원의 출신지 구성비 등 정량평가 문항으로 구성하고, 상호문화도시로의 발전에 대한 시의회의 태도, 일상생활에서의 상호문화적 환경 등 10개 주제를 분류하였다. 주관적 요소를 측정하는 지표는 사회분위기, 이문화 집단간의 친밀도, 서로 다른 민족 집단 사이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느낌 등으로 편성되었다⁴⁵⁾[22]. 이러한 사례를 참조해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문화주의의 지표를 개발해 점검해 나간다면 현지인과 이주자간의 대등한 상호교류 촉진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그동안 한국의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은 한국의 현실과 여성 결혼이주자들의 욕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문화주의의 뜻 이의 대체 이데올로기로서의 상호문화주의의 모두 결국 이주 유입국의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여성 결혼이주자들의 관점과 욕구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와 그에 기반을 둔 정책에 대한 논의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답론을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

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에서 '지역주민 모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 결혼이주자의 비율이 71.2%로 나타난 것은 한국 상호문화주의 지표의 현 주소를 가늠하게 하는 통계이다⁴⁶⁾[30]. 유럽 '상호문화도시' 프로젝트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가 상호 겹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혼성화(hybridization)되는데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우대할 수 있도록 도시가 적절한 진흥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실과 유럽 이데올로기간의 간극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위에서 인용한 연구에서 조사된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의 취업률은 36.9%, 미취업의 경우 향후 취업 희망률은 86.2%,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율은 11.4%이다⁴⁷⁾[30]. 높은 취업 욕구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참여율이 저조함은 현재의 조건에서 여성 결혼이주자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조속히 증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역시 유입국의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와 정책만이 아니라 여성 결혼이주자들의 현실적 희망이 최대한 반영된 정책이 모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수치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결혼이주자의 34.8%가 차별대우의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차별 대우를 받는 장소도 직장 61.3%, 거리나 동네 41.2%, 상점, 음식점, 은행 등 37.1%, 공공기관 24.9%, 집주인, 부동산 19.8%로 특정한 곳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다⁴⁸⁾[30]. 이 역시 상호문화주의의 측정 지표인 이주국 사회 내 주체로서의 지위와 역할 인정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5. 결론

한국사회에서는 압축적 경제성장에 이어 다인종사회화도 압축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구구성이 변하면서 문화 간 접촉 빈도도 높아졌

44) 오정은, 네덜란드의 외국계 주민 통합정책 연구: 틸부르크(Tilburg)시의 상호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29(3), pp. 205-209, 2011.

45) 오정은, op. cit, 2012, pp. 45-49.

46)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81, 488, 491, 494, 2010.

47) ibid, p. 232.

48) 김승권 외, op. cit, p. 510.

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이주정책을 집행해 왔다. 그러나 인구이동의 증가로 국경의 의미가 변하고 시민권의 개념적 확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주자정책은 여전히 기존의 국민국가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유입되는 문화와 주류문화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의 통합을 유지하는 데 있어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지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의 역사가 긴 서구 국가에서도 이주자통합 문제는 위기나 기회 또는 혼합의 다양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적, 실천적 이슈로서 국가적 담론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도 처음에는 이주자들의 사회통합 방안으로 동화정책을 암묵적으로 지향해 왔으나 한계가 노정되었다. 이후에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였지만 영국 태생 무슬림들의 런던 버스 테러사건과 노르웨이에서의 한 극우주의자의 총기 난사사건 등을 거치면서 이 역시 '역진'(backlash)하기 시작했다⁴⁹⁾[31].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서 이주자정책의 기초를 관용적 다문화주의에서 국가통합정책으로 반전하거나, 다문화주의에서 부분적으로 상호문화주의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상호문화주의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인종사회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을 개괄하고,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법과 정책의 내용에서 동화주의 혹은 차별배제형 모형의 특징이 나타나는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의 인종 지향적, 젠더 편향적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초국적 사회적 장'에서의 독특한 정체성 재형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정책의 현실적 지향점으로 상호문화주의의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또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징, 유럽에서 시도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 사례들을 예시하고, 상호문화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와 지역공동체에서 '상호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됨'이 국가 구성원임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었던 국민국가에서의 시민권 개념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간됨'이 기준이 되는 탈국민적 멤버십으로의 인식 전

환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도 여성 결혼 이주자들의 상호문화적 시민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자긍심과 자아존중감을 건인해 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화주의적인 정책 컨텐츠를 집행하고 있는 현재의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의 지향점을 '선택적 동화'의 '다원적 통합'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김리카가 "동화주의는 죽었다"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이제 억압과 배제를 동반하는 완전 동화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도 유지되기 어렵다. 한편 서구국가들에서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일민족으로서의 오랜 전통을 지닌 한국의 경우 현 단계에서는 '선택적 동화'를 통한 '다원적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 결혼이주자정책에서 상호문화적응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나의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해 살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또 그 변화에 따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여성 결혼이주자들을 위해 모국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주류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상호문화적응프로그램을 강화해 실시한다면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호문화주의의 지표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것이다.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유럽 상호문화도시프로그램에서의 평가 지표 등을 참조해 한국의 이주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상호문화성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평가 결과를 이주자정책에 피드백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문화주의 및 이의 대체 이데올로기로서의 상호문화주의 모두 결국 이주 유입국의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한국의 현황과 여성 결혼이주자들의 관점과 욕구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 및 그에 기반 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담론을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확산, 경제적 자립도 제고, 차별 해소, 내국인과 이주자의 다문화사회 주체 간 소통 증진 등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의 적실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성 결혼이주자 정책의 현실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49) 이용승, 한국의 다문화주의, 공주대 세미나, pp. 1-2. 2012.

REFERENCES

- [1] Tae Won Kim, Critical Review of Multicultural Phenomenon in the point of Social Integration, Minjok Munwha Nonchong, Vol. 44, 2010.
- [2] Albert Karcher, Integration Turks in Germany : The Separation of Turks from German Society, Discrimination against Turks in the German Labor Market and Policy Recommendation to Integrate Turks into German Society, Public Policy Studies, April 2010.
- [3] Hermann Kurthen and Barbara Schmitter Heisler, Immigrant Integration : Comparative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Ethnic and Racial Studies 32-1, 2009.
- [4] Cho YongMarn, Park SungBum, A Study of Developing Social Integration Countermeasures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Centered o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German Statistical Data,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53, No.3, 2013.
- [5] Friedrich Heckmann et al., Quantitative Integration Research in Europe - Data Needs and Data Availability, PROMINSTAT Working Paper 3, 2010.
- [6] Geun Koh, Multiculturalism in Korea? : Gendered Multiculturalism and Marriage Migrant Women,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onference, 2010.
- [7] Hyun Mee Kim, Integration for Whom? : Marriage Migrant Women Policies in Korea and Patriarchal Imagination, 2008.
- [8] Ministry of Justice,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3. 12.
- [9] Hye-Kyung Lee,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 State in South Korea : focusing on Governmental Policy, Citizenship Studies, 12(1), 2008.
- [10] Kwon, Young-Ho, Ji, Seong-Woo, Kang, Hyun-Cheol, Evaluation of Legislation abou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09.
- [11]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Prime Minister's Secretaria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Basic Plan for Multicultural Families.
- [12] Ministry of Justice, Social Integration Programme of Immigrants.
- [13] Walker Connor, Ethnonationalism,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14] Ki-Wook Shin, Ethnic Nationalism in Korea,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 [15] Yong Seung Lee, Critical Review of Korean Multicultural Policy, Minjok Yeonku,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Vol. 44, 2010.
- [16] Hwa-Sung Cho, Social Integration between De-and Re-ethnization : A Case Study of Korea, Minjok Yeonku,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Vol. 40, 2009.
- [17] Lydia Morris, Managing Contradiction: Civic Stratification and Migrants' Righ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7, No. 1, 2003.
- [18] LeeAn Jiyong, Resistance to 'integration' by Marriage Migrants, Asian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s, 2008.
- [19] Seol, Dong-Hoon, Multicultural Discourse and Human Right in Korean Society, The 7th Human Right Education Forum,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of Korea, 2009.
- [20] Hwa-Sung Cho, A Review of Social Integration Model of the Marital Immigration in Korea : Application of Two-way Integration Model, Minjok Yeonku, Korean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Vol. 44, 2010.
- [21] Elizabeth Beck-Gernsheim, Family Life Today : New Migrants Choose Partners from Their Country of Family Origins, Gender and Society 7, 2, 2008.
- [22] P. Levitt & N. Jaworsky, Transnational Migration Studies : Past Developments and Future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 2007.
- [23] Young Hee Shim, Transnational Field and Transnational Identity among Women Marriage Migrants in Korea, Comparative Korean Studies,

- Vol. 19(1), 2011, So Hee Son(ed.), Multicultural Society, Immigration and Transnationalism, Bo-Go-Sa, 2012.
- [24] Jung Eun Oh, Interculturalism in Europe, Multiculture & Peace, Multiculture & Peace Institute, Sungkyul University, Vol. 6(1), 2012.
- [25] Young-Sik Huh, Interculturalism as an Approach for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Studies, Vol.2(2),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3. 12.
- [26] Tekessidis, M. Interkultur, Berlin: Suhrkamp, 2010.
- [27] Young-Sik Huh, Chang-Hwa Jung, Interculturalism and the Identity of Korea, Won-Mi-Sa, 2012.
- [28] Hwa-Sung Cho,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Phenomenon in Korea and the New Membership Model, Kongju National University Seminar Paper, 2012.
- [29] Jung Eun Oh, Intercultural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born Residents in Netherlands, European Studies, Vol. 29(3), The Korean Society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2011.
- [30] Ministry of Health & Welfar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A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2010.
- [31] Yong Seung Lee, Multiculturalism in Korea, Kongju National University Seminar Paper, 2012.

김 경 숙(Kim, Kyung Sook)



- 1979년 2월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정치학사)
- 1991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정치학 박사)
- 1983년 9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정부정책
- E-Mail : kskim114@kongju.ac.kr